#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
# (을왕산 IFUS HILL 경제자유구역 지정)
#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

2022. 03.

아이퍼스힐 주식회사

#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

## 1.1 계획의 배경 및 목적

### 1.1.1 계획의 배경

#### 가. 경제 · 사회 구조의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

○ 코로나19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

○ 정부의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노력

#### 나. 신 한류(K-Culture)의 도약 위한 한국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필요성 대두

○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타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유망 산업

○ 디지털 콘텐츠 시장 성장에 따른 한국 콘텐츠 진출 기회 확대

#### 다. 인천의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

○ 제조업의 정체 및 고도화 부진, 서비스업의 생산성 저조로 인하여 주력산업의 확장 및 전환 필요

#### 라. 신성장동력으로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

○ 영상콘텐츠산업은 인천의 기존 주력산업 및 핵심전략산업 연계발전 가능

○ 영종국제도시 영상콘텐츠 산업 허브화로 인천의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 입지 강화

### 1.1.2 계획의 목적

#### 가. 국내 · 외관광객 집객

○ 드라마 세트장, 영화 촬영장, K-POP 테마파크 등 한류체험공간 압축적 조성

○ 주변 관광자원 및 개발사업과 연계한 문화관광벨트 조성

#### 나.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

○ 한류아이템을 기반으로 미디어 및 가상현실(VR) 등의 체험공간 조성

○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 관광네트워크 구축으로 중·장기 체류형 상품 개발

#### 다. 인천 브랜드가치 상승

○ 경제자유구역 재지정 및 주변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영종·용유지역의 새로운 가치 발굴

○ 우수한 입지여건 및 기존 상권과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## 1.2 전략환경영향평가(개발기본계획) 실시근거

○ 본 계획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(을왕산 IFUS HILL 경제자유구역 지정)으로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관련 [별표2]의 『2. 개발기본계획』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

**<표 1-1> 전략환경영향평가(개발기본계획) 실시근거**

| 구 분 | 행정계획의 종류·규모 | 협의요청시기 |
|---|---|---|
| 파. 특정지역의 개발 | 1)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|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|

자료 :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[별표2], 2021.8.10. 개정

**<표 1-2>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근거**

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(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)

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(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)

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(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,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(이하 “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”이라 한다)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.

## 1.3 사업의 추진경위

○ 2003. 08. 11 :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(재정경제부고시 제2003-19호)

- 지정고시 면적 : 총 209㎢ (송도: 53㎢, 영종 : 138㎢, 청라 : 18㎢)

○ 2018. 02. 01 :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을왕산 PARK52 지정해제 의제 고시 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-8호)

- 지정해제 면적 : 0.61940㎢

○ 2018. 06. 11 : 민간제안사업 접수 [제안사: SG산업개발(주)]

○ 2018. 07. 30 : “용유 을왕산 개발 사업제안 공모” [제3자 공모]

○ 2018. 09. 19 :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[SG산업개발(주)]

○ 2018. 10. 22 : 사업협약 체결 [인천경제자유구역청 / SG산업개발(주)]

○ 2018. 11. 05 :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착수

○ 2022. 01 :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의견수렴

○ 2022. 03 :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및 의견수렴(예정)

○ 2022. 05 :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제출(예정)

○ 2022. 06 :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·공고(예정)

○ 2022. 07 :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(예정)

○ 2022. 07 :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및 협의요청(예정)

## 1.4 사업의 내용

**가. 계획명칭 :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(을왕산 IFUS HILL 경제자유구역 지정)**

**나. 계획위치 :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77-4번지 일원**

**다. 계획규모 : 807,733㎡**

**라. 계획시행예정자 : 인천광역시 및 아이퍼스일 주식회사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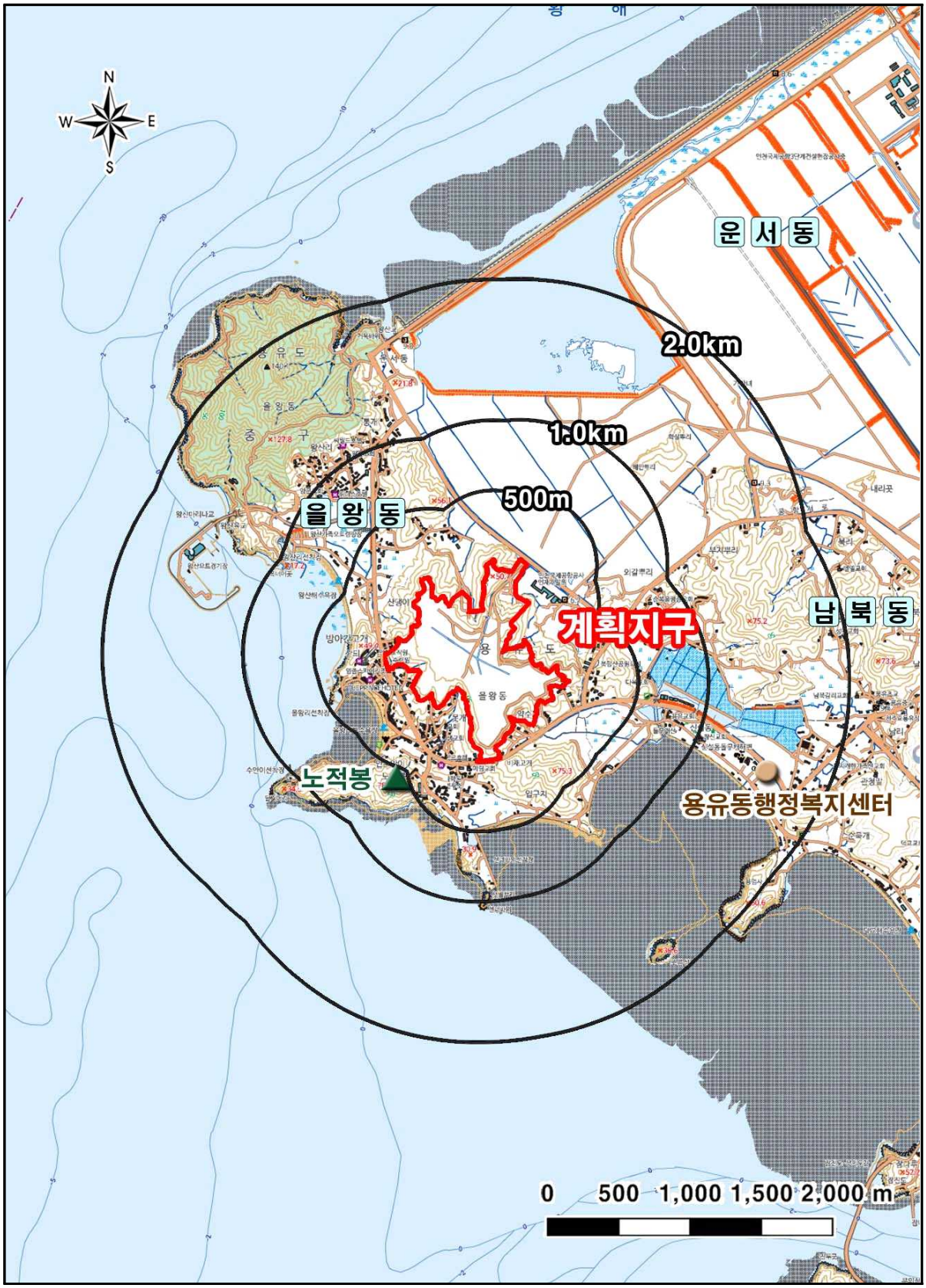
**마. 승인기관 : 산업통상자원부**

**바. 계획기간 : 2021년 ~ 2025년**

**사. 사업비 : 약 2,300억원**

**아. 경제자유구역 결정(변경) 조서**

| 구 분 | | 기 정 | 변 경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지 구<br>(총 괄) | 명 칭 |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| | · 변경없음 |
| | 위 치 | 인천 중구 운서, 운남, 운북, 중산, 을왕, 남북, 덕교, 무의동 일원 | | · 변경없음 |
| | 면 적 | 51.27㎢ | 52.08㎢ | · 을왕산 IFUS HILL 0.81㎢ 재지정 |
| 단위개발<br>사업지구 | 명 칭 | - | 을왕산 IFUS HILL | · 재지정 |
| | 위 치 | - | 인천시 중구 을왕동 산77-4 일원 | · 재지정 |
| | 면 적 | - | - | · 재지정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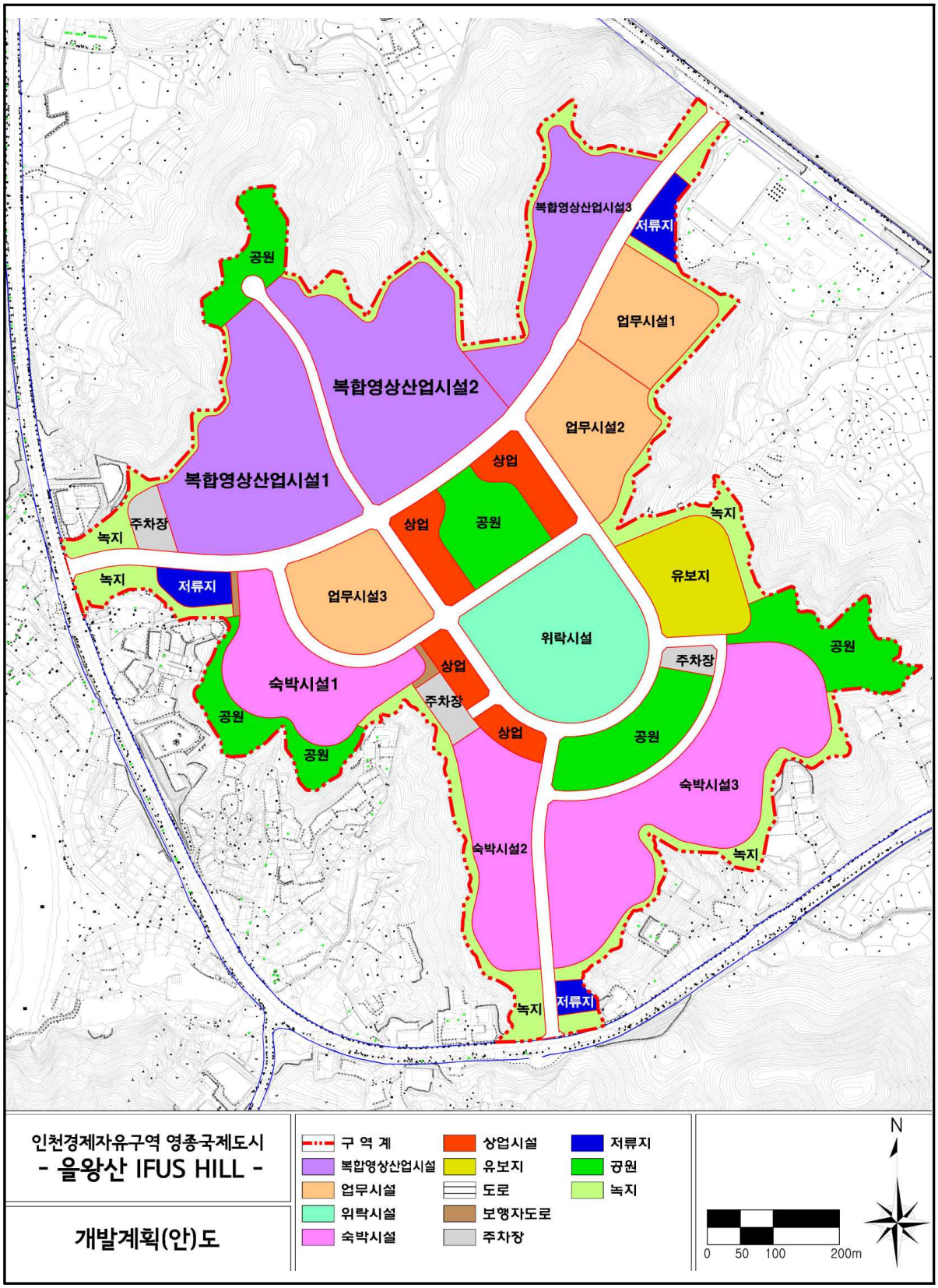



(그림 1-1) 계획지구 위치도

## 사. 사업내용

### <표 1-3> 토지이용계획

| 구 분 | | 면적(㎡) | 구성비(%)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| 807,733 | 100.0 | - |
| 산업용지 | 소계 | 258,660 | 32.0 | - |
| | 복합영상산업시설 | 174,080 | 21.5 | - |
| | 업무시설 | 84,580 | 10.5 | - |
| 관광용지 | 소계 | 205,422 | 25.4 | - |
| | 위락시설 | 53,109 | 6.6 | - |
| | 숙박시설 | 152,313 | 18.8 | - |
| 상업용지 | 상업시설 | 30,276 | 3.8 | - |
| 공공시설용지 | 소계 | 287,999 | 35.7 | - |
| | 도로 (보행자도로 포함) | 91,350 | 11.3 | - |
| | 주차장 | 12,764 | 1.6 | - |
| | 저류지 | 13,729 | 1.7 | - |
| | 공원 | 90,764 | 11.3 | - |
| | 녹지 | 79,392 | 9.8 | - |
| 유 보 지 | | 25,376 | 3.1 | |




**(그림 1-2) 토지이용계획도**

## 1.5 상위계획과의 적정성

○ 상위 및 관련계획상 지식·관광서비스산업 분야의 역할이 기대되며, 영상콘텐츠산업 중요성 대두

○ 지역의 중·장기적 발전으로 인하여 영상콘텐츠산업 및 관광중심기능 육성이 불가피함

- 영상콘텐츠산업 및 관광분야 등 사업 추진구조 다각화
- 해제구역에 대한 주민의 자율적 개발 및 잠재적 민간 투자 유도

**<표 1-4> 상위계획의 주요내용**

| 구 분 | 주 요 내 용 |
|---|---|
| 제5차 국토종합계획<br>(2020~2040년) | ○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<br>○관광·레저산업 집중 육성<br>○새로운 한류문화 확산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|
| 제3차<br>관광개발기본계획<br>(2012~2021년) | ○창조적 해양관광도시와 관문도시<br>○입지우위를 활용한 국제교류기능<br>○해양활동과 녹색관광을 실현 |
| 2030년<br>인천도시기본계획 | ○인천국제공항 관광수요를 활요한 국제적 복합관광도시 육성<br>○대북연계를 위한 평화벨트축 설정<br>○국제적 기능수행을 위한 국제기반축 설정 |
| 제2차 경제자유구역<br>기본계획 | ○국내외 혁신형기업 비즈니스 거점<br>○일자리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<br>○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|
| 경제자유구역<br>핵심전략산업 고시<br>(산업부고시<br>제2021-186호) | ○인천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중 “지식·관광서비스산업”에 부합<br>- 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<br>-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,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<br>-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<br>-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<br>- 전시, 컨벤션 행사 대행업<br>- 공연시설 운영업, 공연기획업, 박물관 운영업<br>-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(테마파크)<br>- 기타 수상 오락 서비스업(해양레저, 마리나업) |
| 영종지구<br>통합마스터플랜 | ○영종지구 중 관광레저·위락 기능<br>○용유도 : 고급형 리조트와 마리나<br>○무의도 : 생태 휴양관광 |
| 주변 개발계획 | ○영종하늘도시 및 미단시티 등 주변지역 개발의 지속성 추진<br>○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등 입지여건 향상<br>○인스파이어, 미단시티 등 복합리조트 개발 |

## 가.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(2018~2027)

○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은 국내 최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서, FEZ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며 해양레저·관광인프라 확대를 위한 복합리조트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중점유치업종으로 복합리조트(호텔, 테마파크 등)를 제시하고 있어 본 개발사업과 도입시설 등이 상위계획과 부합함

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(2018~2027)
-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전략

| 비전 |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 |
|---|---|

| 목표 |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| 글로벌 교육도시 | 문화·레저 허브 |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 | 스마트시티 |
|---|---|---|---|---|---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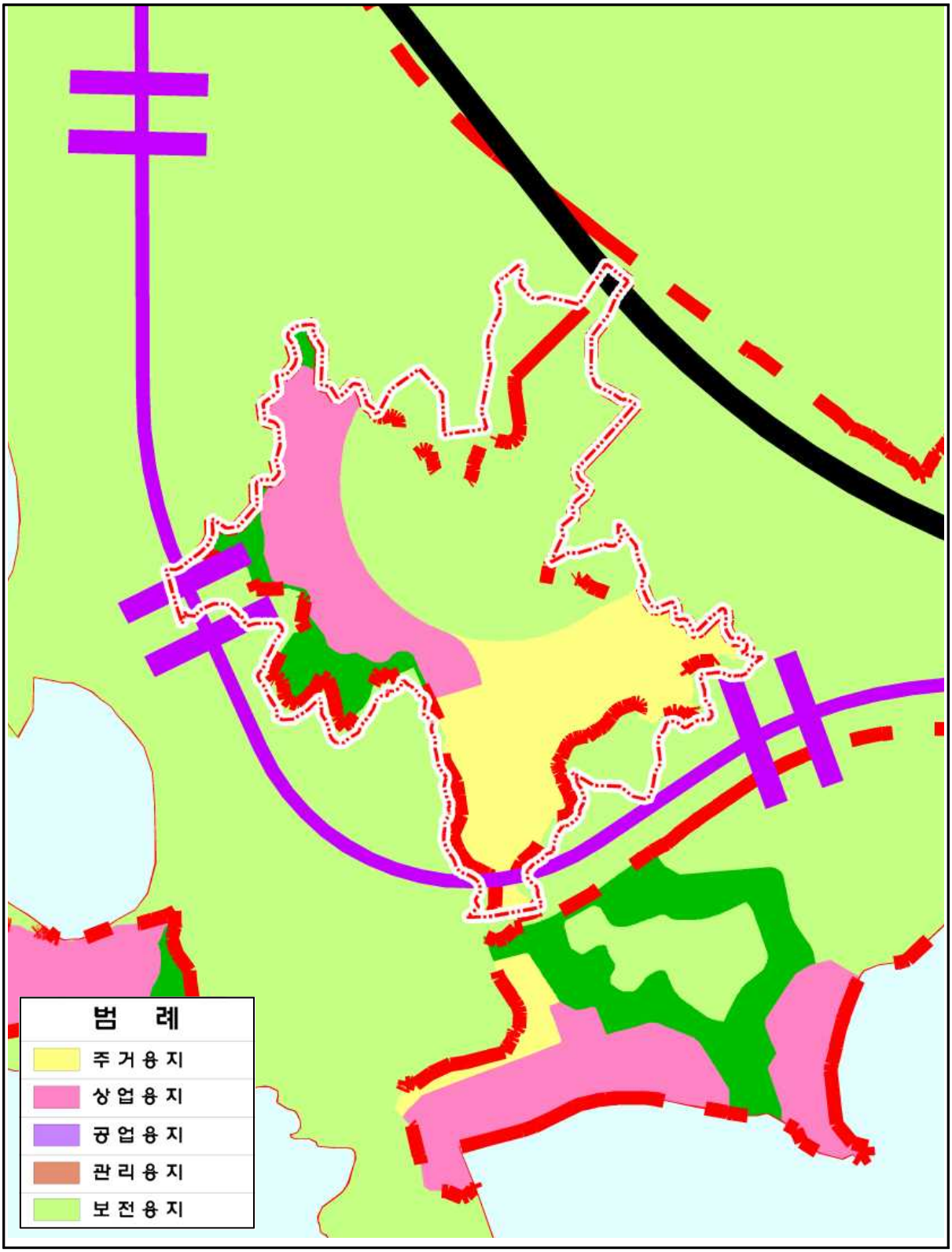
| | 전략 | 추진 과제 |
|---|---|---|
| 전략·과제 | Ⅰ. 글로벌 경제플랫폼 | 1. 공항·항만경제권 육성<br>2. FTA 전략적 거점<br>3. 국제기구 도시<br>4.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(서해경제공동특구) |
| | Ⅱ. 서비스 산업허브 | 5. 글로벌교육, R&D<br>6. MICE 복합관광<br>7. 금융·지식서비스<br>8. 해양·레저<br>9. 문화예술콘텐츠<br>10. 첨단유통·물류 |
| | Ⅲ. 융복합 산업허브 | 11. 바이오 헬스케어<br>12. 첨단기술 융·복합 |
| | Ⅳ. 컴팩&스마트시티 | 13. Smart-City<br>14. 친환경 경관특화<br>15. 저탄소에너지 절감 |

- 중점유치업종

| 업종 | 업종의 범위 및 예시 | 세부 업종 내역 |
|---|---|---|
| 지식서비스 | 국제관련 지식서비스, GCF운용, 국제금융, 전문서비스, 국제기구, MICE(전시컨벤션, 국제회의,) **복합리조트(호텔, 테마파크,** 카지노, 해양레저 등) 정보서비스(블록체인 기술 등) | 55111 호텔업 |
| | | 59112 애니메이션 및 비디오물 제작업 |
| | | 59120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|
| | |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(극장) |
| | | 90191 공연기획업 |
| | | 90221 박물관 운영업 (전시) |
| | |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(전시) |
| | |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(테마파크) |
| | |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(카지노) |
| | | 91139 그 외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(조정장, 카누) |
| | | 91239 기타수상온락서비스업(해양레저, 마리나업) |

## 나.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(2011~2030)

○ 본 사업은 인천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용지, 상업용지, 보전용지로 계획되어 있음



#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결과

## 2.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

### 2.1.1 승인기관 : 산업통상자원부

### 2.1.2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

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1조(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)에 의거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항목·범위 등을 결정하였음

- 심의기간 : 2022년 01월 18일 ~ 02월 04일

환경영향평가법 제8조(환경영향평가협의회)
① 환경부장관, 계획 수립기관의 장,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(이하 "승인기관의 장"이라 한다)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1.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

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(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)
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

**<표 2-1>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원**

| 구분 | 성 명 | 직 위 | 소 속 |
|---|---|---|---|
| 1 | 강영훈 | 위원장 | 인천경제자유구역청(영종청라개발과) |
| 2 | 마승아 | 위 원 | 환경부(환경영향평가과) |
| 3 | 이현미 | 위 원 | 인천경제자유구역청(환경녹지과) |
| 4 | 전동준 | 위 원 | 한국환경연구원 |
| 5 | 배연호 | 위 원 | 중구청(친환경위생과) |
| 6 | 두은경 | 위 원 | 한강유역환경청(환경평가과) |
| 7 | 강동규 | 위 원 | 용유동 주민자치회 |
| 8 | 박주희 | 위 원 | 인천녹색연합 |
| 9 | 양준용 | 위 원 | 국립수산과학원 |

"살고 싶은 도시, 함께 만드는 인천"

#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

환경특별시 인천

수신 아이퍼스힐(주) 대표이사 귀하
(경유)
제목 을왕산 IFUS HILL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통보

1. 아이퍼스힐 주식회사 M00011-723023(2022. 1. 5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(을왕산 IFUS HILL 경제자유구역 지정)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, 심의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조치계획서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현황 및 의견서 1부. 끝.

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

| 주무관 | 강진우 | 용유무의계획 담당 | 우창식 | 영종청라계획 과장 | 전결 2022.2.7. 강영훈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협조자 | | | | | |

시행 영종청라계획과-818 (2022. 2. 7.) 접수

우 2200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, G타워 (송도동) / http://www.ifez.go.kr

전화번호 032-453-7592 팩스번호 032-440-8777 / jinu0202@korea.kr / 비공개(6)

인천시가 과잉대응하면 시민은 더 안전합니다

1 - 1

all ways INCHEON

## - 을왕산 IFUS HILL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-

#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현황

### 1 협의회 심의

○ 안　　건: 영종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(을왕산 IFUS HILL 경제자유구역 지정) 전략환경영향평가

○ 심의기간: 2022. 1.18. ~ 2. 4.

○ 심의방법: 서면심의

○ 심의위원: 9명(위원장 1인, 위원 8인)

| 구분 | 성　명 | 직 위 | 소　　속 | 심의서 제출여부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강영훈 | 위원장 | 인천경제자유구역청<br>(영종청라개발과) | 제출 |
| 2 | 마승아 | 위　원 | 환경부<br>(환경영향평가과) | 제출 |
| 3 | 이현미 | 위　원 | 인천경제자유구역청<br>(환경녹지과) | 제출 |
| 4 | 전동준 | 위　원 | 한국환경연구원 | 제출 |
| 5 | 배연호 | 위　원 | 중구청<br>(친환경위생과) | 제출 |
| 6 | 두은경 | 위　원 | 한강유역환경청<br>(환경평가과) | 제출 |
| 7 | 강동규 | 위　원 | 용유동 주민자치회 | 제출 |
| 8 | 박주희 | 위　원 | 인천녹색연합 | 제출 |
| 9 | 양준용 | 위　원 | 국립수산과학원 | 제출 |

### 2 향후 추진계획

○ 2022. 2.: 평가 준비서 보완(시행예정자)

○ 2022. 3.: 평가 항목 등 범위 결정 및 공개(경제청)

○ 2022. 4.: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제출(시행예정자)

all ways INCHEON

**붙 임** **위원별 심의의견**

[별지 제1호서식]

##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
(을왕산 IFUS HILL 개발사업 )

□ 총 괄 의 견

○ 사업 시행시 자연생태환경, 대기환경, 수환경, 생활환경 등에 대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,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○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, 공사 및 운영시 다양한 환경영향 요소를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함. 특히, 영상산업단지 특성상 주야간 촬영 등에 의한 빛 공해 및 영상세트장 제작에 따른 소음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영향범위 설정이 필요함

2. 토지이용 구상안

○ 사업 대상지의 추가 토석절취를 감안하여 지형지물을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함

3. 대안

○ 시설물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장, 단점을 비교하여 환경적 피해 우려시 대안 제시가 필요함

4. 평가 항목 · 범위 · 방법 등

○ 사업완료후 상주, 유동인구 증가로 영향을 받게 되는 생활환경 영향예측 분야 추가 필요함

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○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적극적인 사업 반영 필요함

6. 기 타(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)

○ 의견 없음

2022. 1. 28.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강 영 훈

- 2 -

all ways INCHEON

#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

[을왕산 IFUS HILL 경제자유구역 지정]

## □ 총괄의견

○ 본 계획은 인천 중구 을왕동 산 77-4번지 일원에 을왕산 IFUS HILL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본 계획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을 제시하고 동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함

○ 평가서는 「환경영향평가법」 관련 규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 고시 제2020-289호, '20.12.22)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

## 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○ **전략환경평가 대상지역의 설정**

-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동 계획으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하여 설정
- 계획지구 인근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·예측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최대한의 지역을 설정하여 면밀히 조사

○ **토지이용구상안 및 대안**

- 사업지구 입지 특성, 지형·생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
- 계획지구 내 임야가 97.1%를 차지하므로 부지조성에 따른 대규모 절토사면 및 사토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질재해(사면 붕괴 등)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형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

○ **평가항목 및 범위·방법 등**

- 동·식물상 조사는 출현, 생육 등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시기, 횟수 등을 선정하여 현지조사 실시
- 사업시행시 생활환경(대기질, 소음·진동 등)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
  ·대기질, 위생·공중보건 항목의 평가범위는 2km 이상으로 확대

○ **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**

-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, 저감방안 등에 대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작성하여 초안과 함께 비치하고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인 의견수렴 실시

2022. 1. .

심의위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마승아

- 3 -

all ways INCHEON

##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
(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)

□ 총 괄 의 견

○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『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곤한 규정(환경부고시 제2020-289)』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

○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분야별로 수립하여야 함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○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여야 함

2. 토지이용 구상안

○ 공원 및 녹지폭 등은 충분히 확보되도록 토지이용 구상

○ 생태 및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

3. 대안

○ 각 항목별 입지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 의견 기술이 필요함

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
○ 평가항목 및 범위, 방법 등에 따른 문제들을 예측하고 해결방안을 수립하여야 함

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○ 평가 대상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과 제시된 의견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을 검토하여야 함

6. 기 타(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)

○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한 자료 제시 요함

2022. 1. .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이현미 (인)

- 4 -

all ways INCHEON
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

##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

《 을왕산 IFUS HILL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》

□ 총 괄 의 견

○ 대상지역에 계획된 개발사업에 대한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야 함
○ 대안별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최적 대안을 선정하여야 함(※계획 대안을 면밀히 비교·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여야 함)
○ 개발예정지 주변 유사 개발사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개발규모 등 계획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개발사업이 계획되어야 함
○ 시설물 배치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대안 제시 및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·제시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○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측면에서의 영향 여부, 영향 정도를 검토·제시하여야 함

□ 심 의 의 견

1.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
○ 의견없음

2. 토지이용 구상안
○ 개발사업 계획 수립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하고, 이를 토지이용계획(변경)에 반영하여야 함
○ 구체적인 자료와 분석을 통해 적정 규모의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3. 대안
○ 생활환경 측면에서의 다양한 대안검토(시설물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, 운영계획 등)가 요구됨

4. 평가항목 및 범위 ·방법 등
○ 해양환경에 대한 조사 및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

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○ 의견없음

6. 기타(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)
○ 의견없음

2022. 1. 25.

심의위원 전 동 준 (인)

all ways INCHEON

##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
[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(을왕산 IFUS HILL)]

□ 총 괄 의 견

○ 계획 수립에 따라 각 항목별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.

○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준비서로서 계획에 따른 공사시 비산먼지, 폐기물 발생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.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○ 공사 및 운영시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대상지역 설정이 필요함.

○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사업시행 시 주변 주민 주거지역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확대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

2. 토지이용 구상안

○ 교통계획 및 토지이용 계획 수립 시 주변 민원사항 및 개발에 따른 주변환경 변화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.

3. 대안

○ 환경요인 및 토지이용에 대한 장단점을 구분한 대안이 필요함.

4. 평가 항목 · 범위 · 방법 등

○ 동·식물상 법정 보호종 및 희귀종에 대한 보호 및 보전대책이 필요함.

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○ 주민 의견 수렴이 용이한 지역으로 주민설명회가 실시되어야 하며, 주민의견 수렴 공고·공람·설명회 시 동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.

6. 기 타(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)

○ 의견 없음

2022. 1. .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배 연 호 (인)

- 6 -

all ways INCHEON
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

##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(을왕산 IFUS HILL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)

□ **총괄의견**

○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현황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의 필요성·타당성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적 누적영향 등을 면밀히 예측·평가한 후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

○ 동 계획의 상위계획(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)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(수요·공급 규모의 적정성 등)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.

□ **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**

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○ 대상지역의 설정은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경관 훼손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,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동 사업구역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, 그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.

○ 육·해상 생물상 조사결과에 따라 법정보호종의 서식 여부를 확인하고, 필요 시 보전지역의 설정 등 대상지역의 경계를 재설정하여야 함.

2. 토지이용 구상안

○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현황과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본 사업 개발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함.

3. 대안

○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보전에 대한 대안은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대안(No Action 대안)을 포함한 3개 이상 설정을 비교·제시하여 장·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,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.

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
○ 육·해상 동·식물조사는 계절특성을 반영하고 생육·활동이 왕성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사 시기, 조사 횟수, 지점·범위 등을 선정하여야 함.

- 사업지역 내 법정보호종 분포 현황(생물서식지 등) 및 영향예측, 생태계의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지역(중점지역) 범위를 설정하고, 동물상의 서식시기를 고려하여 중점 조사 실시

○ 대기질(악취 포함) 및 소음·진동 평가대상지역 범위는「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(환경부)」및 주변 정온시설, 개발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목별 평가범위를 설정하여야 함.

- 사업부지 주변 정온시설 및 오염유발시설 현황(이격거리 등)이 누락되지 않게 정확히 파악하고 영향예측 결과를 면밀히 분석·제시

○ 사업지구 내, 주변지역 주요 조망점(도로 등)에서의 경관영향분석(경관시뮬레이션 등)을 실시하여 제시하여야 함.

- 주변 환경(특히, 해안)과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계획(건물높이 및 밀도 관리, 배치계획, 통경축 확보 등)을 수립·제시

○ 사업시행 시 발생되는 토사 및 비점오염물질, 오수 처리수 등으로 인한 하류 수계(인근 해양 등)에 미치는 영향 검토 후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.

○ 수계현황(이용현황, 수질상태, 유량 등)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하고, 사업 시행에 따른 수질 평가대상범위(직·간접 범위)를 설정하여 구간 대표 1개 지점 이상에서 측정하여야 함.

○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시 조사지점 선정은 현황 조사지점, 공사 시 및 운영 시 영향예측지점과 연계되도록 선정하여야 함.

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○ 평가 대상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, 제시된 의견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.

-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사항 적극 홍보

6. 기 타

○ 관련계획과의 부합 및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관련계획에서 검토된 내역을 참조·인용 시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.

○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, 문헌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.

○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작성 시 동 심의의견의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.

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2. 2. 3.

심의위원 :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두은경 (인)

**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**

all ways INCHEON

[별지 제1호서식]

##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
(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)

□ 총 괄 의 견

○ 율왕산 개발에 있어서 추가적인 절토가 있을시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.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○ 대상지역 경계로부터 500m 평가대상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.

2. 토지이용 구상안

○ 사업대상지와 주변 마을의 경계부분에 대하여 추가 절토로 인한 단차 등 발생되지 않도록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.

3. 대안

○ 의견 없음

4. 평가 항목 · 범위 · 방법 등

○ 의견 없음

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○ 지역 주민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야 할 것입니다.

6. 기 타(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)

○ 의견 없음

2022. 2. 4.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강동규 (인)

- 9 -

all ways INCHEON

##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
(을왕산 IFUS HILL 개발사업)

□ 총괄의견

○ 기후위기 시대에 사업대상지 일대에 태양광 설치 혹은 나무 식재 등 공원조성 사업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.

○ 만약 사업을 진행한다면, 사업대상지 인근 일대는 각종 카페, 식당 등 사업장이 난립해있으며, 갯벌, 해안가 등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은 곳으로 혼잡한 상황임. 사업이 추진된다면 일대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.

○ 사업대상지는 나대지이나 오랫동안 인위적인 개입이 없었던 곳으로 생물상을 1년 이상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,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상 주변 갯벌과 해안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.

○ 국가 및 지방정부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'탄소중립'에 발 맞추어 에너지, 자원순환 분야를 고려한 계획과 운영을 적극 추진해야 함.

□ 심의의견

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○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항목에서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km로 확대해야 함.

○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측면에서 인근 토지이용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, 인근 일대 도시계획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.

2. 토지이용 구상안

○ 유치업종 관련, 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카지노는 지역사회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하며, 숙박시설 또한 영종일대 숙박업자들로부터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. 유치업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함.

3. 대안

4. 평가 항목, 범위, 방법 등

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6. 기타(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)

○ 탄소중립이 국가 및 지방정부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, 재생에너지로 소비에너지를 충당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.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자발적인 노력이 아닌 시스템을 고려해야 함.

2022. 1. 28.

심의위원 박 주 희 (인)

all ways INCHEON

##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
(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)

□ 총 괄 의 견

○ 토지이용 구상안에서 숙박시설의 비율이 높아 사업의 목적 달성이 우려되고 주변 숙박시설과 경쟁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과 친환경적 사업 시행을 위해 녹지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임

○ 공사 중이나 운영할 때 서해 갯벌 생태축 보전과 해양보호생물을 고려하여 평가범위를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.0 km로 확대하고, 해양수질은 해양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함

□ 항목별 결정 내용에 대한 의견

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

○ (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)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갯벌 등 연안해역의 자연환경자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공간적 평가대상 지역을 '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.0 km'로 확대

*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별표 3)의 해양보호생물을 고려

○ (지형 및 생태축 보전) 해양생태계법 제9조의2에 따른 해양생태축 중 서해 갯벌 보전축을 고려하여 공간적 평가대상 지역을 '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.0 km'로 확대하고, 시간적 평가대상에 '운영시'를 추가

* 사업대상 인근 해역의 갯벌이 용진 장봉도 갯벌과 송도 갯벌을 연결하는 선 내부에 위치

2. 토지이용 구상안

○ 을왕산 IFUS HILL 개발사업은 신성장동력으로 영상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복합영상산업단지 조성을 목적

- 산업용지의 복합영상산업시설 토지이용이 21.5%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관광용지 중 숙박시설은 18.8%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됨

* 을왕동, 운서동 등 인근 지역에 숙박시설이 이미 많을 것으로 보여 숙박시설 관련 지역경제의 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음

3. 대안

○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대안 1의 녹지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

* 편입한 토지가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었으므로 녹지 비율을 높이는 것이 친환경적 계획이라고 생각됨

- 12 -

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
○ 해양수질은 해양환경관리법 제8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(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-10호)을 따르고,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에서 해양보호생물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

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○ 계획지구 인근 해역에 마을어업 등 어업권이 위치하고 있어 어업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어업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포함하도록 계획 수립

2022. 1. 28.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양 준 용 (인)

# 제 3 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## 3.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○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보전, 생활환경의 안전성, 사회·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 제반 환경상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영향정도를 예측·분석하기 위해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주요 평가항목별로 사업의 특성, 입지적 범위 및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장·단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주요 항목별로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함

### 가. 입지적 범위

○ 위치 :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77-4번지 일원

○ 면적 : 807,733㎡

### 나. 공간적 범위

○ 직접영향권 : 계획지구 내

○ 간접영향권 : 주변 인접 영향권 및 인근 주거시설

### 다. 시간적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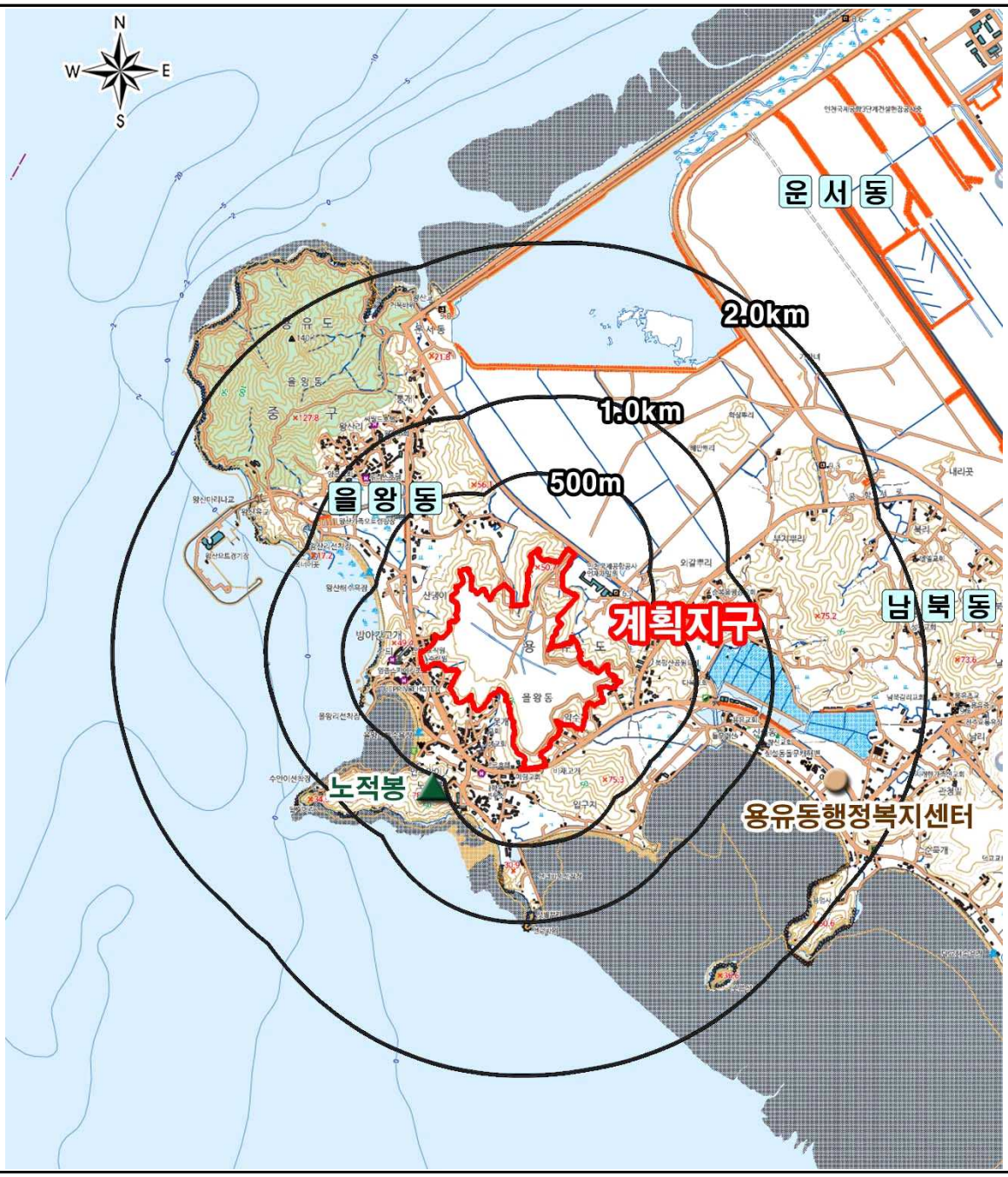
○ 공사시 및 운영시

### 라. 주요 항목별 평가대상범위

○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은 사업의 유형별·단계별로 환경영향을 주는 인자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「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」 및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시 환경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평가항목별로 사업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함

## <표 3-1>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범위 및 설정 기준

| 평가항목 | | 평가대상지역 설정 | | 선정사유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시간적 | 공간적 | |
| 가) 자연환경의 보전 |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 | 공사시<br>운영시 | ○동·식물상<br>: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.5km 이내<br>○해양동·식물상<br>: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.0km 이내 | ○계획 수립시 육상 동·식물상 및 해양 동·식물상 등 생태의 변화<br>○육상 및 해양 생태계의 변화 예상 |
| | 지형 및 생태축 보전 | 공사시<br>운영시 | ○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.0km 이내 | ○계획 수립에 따른 지형 및 생태축 변화 |
| |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| 공사시<br>운영시 | ○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| ○계획 수립에 따른 스카이라인 등 경관변화 |
| | 수환경의 보전 | 공사시<br>운영시 | ○계획지구 인근 수계<br>○해양수질<br>: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.0km 이내 | ○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지구 인근 수계 및 해역에 영향이 예상 |
| 나) 생활환경의 안정성 | 환경기준의 부합성 | 공사시<br>운영시 | ○대기질<br>: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2.0km 이내<br>○토양 및 소음·진동<br>: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.5km 이내 | ○타 항목의 기초자료로 활용(기상)<br>○계획 수립에 따른 대기, 토양, 소음·진동 등 영향 검토 |
| |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| 공사시<br>운영시 | ○인천광역시 | ○계획지구 내 오염물질 발생 및 처리가능 여부 |
| | 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| 공사시<br>운영시 | ○계획지구 | ○폐기물 및 온실가스 발생 |
| 다) 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| | 공사시<br>운영시 | ○계획지구 | ○계획시행 전·후 사회·경제 환경의 변화<br>○계획시행 전·후 토지이용상의 변화 |




| 구 분 | 평 가 항 목 |
|---|---|
|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| ○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, 수환경의 보전, 토양, 소음·진동,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, 자원·에너지순환의 효율성, 사회·경제환경과의 조화성 |
| 경계로부터 500m | ○동·식물상 |
| 경계로부터 1.0km | ○해양동·식물상, 해양수질, 지형 및 생태축 보전 |
| 경계로부터 2.0㎞ | ○대기질 |

**(그림 3-1) 평가대상지역 설정도**

# 제 4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

## 4.1 평가 항목의 설정

○ 평가항목은 「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, 2017.12, 환경부」 및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, 환경부 고시2018-205호」에 제시된 “환경분야별 검토항목” 및 “대상사업별 주요평가항목” 등을 기준으로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설정하였음

**<표 4.1-1> 평가항목 선정 및 선정사유**

| 평가항목 | | 선정사유 | 선정 |
|---|---|---|---|
| **1) 계획의 적정성** | | | |
| 가)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| | ◦계획 수립 시 관련 상위계획과 연계성 검토 | ○ |
| 나) 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 | | ◦계획 수립 전·후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적정성 검토 | ○ |
| **2) 입지의 타당성** | | | |
| 가)자연환경의 보전 |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 | ◦계획 수립시 동·식물상 등 생태의 변화<br>◦육상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 예상 | ○ |
| | 지형 및 생태축 보전 | ◦계획 수립에 따른 지형 및 생태축 변화 | ○ |
| |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| ◦계획 수립에 따른 스카이라인 등 경관변화 | ○ |
| | 수환경의 보전 | ◦계획 수립에 따른 수환경 영향이 예상<br>-계획지구 인근 수계 및 해역 | ○ |
| 나)생활환경의 안정성 | 환경기준의 부합성 | ◦타 항목의 기초자료로 활용(기상)<br>◦계획 수립에 따른 대기, 토양, 소음·진동 등 영향 검토 | ○ |
| |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| ◦계획지구 내 오염물질 발생 | ○ |
| | 자원·에너지순환의 효율성 | ◦폐기물 및 온실가스 발생 | ○ |
| 다) 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| | ◦계획시행 전·후 사회·경제환경의 변화<br>◦계획시행 전·후 토지이용상의 변화 | ○ |

## 4.2 항목별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 등 설정

○ 본 사업시행으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자연생태환경, 대기환경, 수환경, 토지환경, 생활환경 및 사회·경제환경분야 등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범위 및 방법을 설정하였으며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함

**<표 4.2-1> 항목별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 등 설정**

| 평가항목 | | 평가범위 | 평가방법 |
|---|---|---|---|
| 1)계획의 적정성 | | | |
| 가)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| | ◦인천광역시 | ◦본 계획 및 상위계획 자료 분석 |
| 나) 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 | | ◦인천광역시 | ◦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(No action)를 포함한 계획비교 |
| 2) 입지의 타당성 | | | |
| 가)자연환경의 보전 |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 | ◦동·식물상 :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.5㎞ 이내 지역<br>◦해양동·식물상 : 계획지구경계로부터 1.0㎞ 이내 지역 | ◦각종 보호지역, 보호야생동물 서식여부 확인 및 영향여부 검토<br>◦각 분류군별 현지조사 후 영향예측 |
| | 지형 및 생태축 보전 | ◦계획지구경계로부터 1.0㎞ 이내 지역 | ◦학술적, 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, 생태축 등 생태적 연속성 확인 및 영향여부 검토<br>◦토공작업에 따른 지형변화 검토 |
| |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| ◦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| ◦생태적, 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영향여부 검토<br>◦계획시행 전후의 경관변화 검토 |
| | 수환경의 보전 | ◦계획지구 인근 수계<br>◦해양수질<br>: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.0km 이내 | ◦계획지구 인근 수계 및 해양에 미치는 영향 검토 |
| 나)생활환경의 안정성 | 환경기준의 부합성 | ◦대기질<br>: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2.0km 이내<br>◦토양 및 소음·진동<br>: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0.5km 이내 | ◦환경기준 부합여부 조사, 계획수립에 따른 각 환경요소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 및 부합성 검토<br>◦계획지구의 환경현황 정량적 조사<br>◦공사 및 운영계획에 따른 영향검토 |
| |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| ◦인천광역시 | ◦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처리방법 검토 |
| | 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| ◦계획지구 | ◦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계획 검토<br>◦공사 및 운영시 발생 폐기물 및 온실가스량 검토 및 대책수립 |
| 다) 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| | ◦계획지구 | ◦본 계획의 분석을 통하여 친환경적 계획 검토<br>◦토지이용계획의 변화 검토 |

# 제 5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

## 5.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

○ 협의회에서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내용은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(http://www.ifez.go.kr)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https://www.eiass.go.kr)에 14일 이상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

## 5.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계획

### 5.2.1. 초안 공고 및 공람계획

○ 공고시점 : 초안보고서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

○ 공고장소 : 전국일간신문,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

○ 공고기간 : 30일 계획
(관련계획일정에 따라 20일~40일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음)

○ 공고내용

- 개발기본계획의 개요
-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장소
-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
- 초안 요약서 공람 실시 내용

○ 초안서 및 주민의견서 비치장소 : 인청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관계부서
(관련계획에 비치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)

### 5.2.2. 초안 요약서 및 초안보고서 공고 및 공람계획

○ 공고시점 : 초안보고서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

○ 공고장소 :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,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EIASS)

○ 공고기간 : 30일 계획

○ 공고방법 : 초안 신문공고에 실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

## 5.3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

### 5.3.1. 주민설명회

○ 개최시점 :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람기간내(설명회 개최하기 7일전 일간 및 지역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)

○ 개최장소 : 일간 및 지역신문에 장소를 결정하여 공고할 계획

○ 개최공고 :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(일간 및 지역신문)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

### 5.3.2. 주민공청회

○ 개최시점 : 주민의 개최 필요의견 제출시 (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)

1. 개최 필요 의견 제출주민 30명 이상인 경우
2. 개최 필요 의견 제출주민이 5명 이상이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%이상인 경우

○ 개최장소 : 일간 및 지역신문에 장소를 결정하여 공고할 계획

○ 개최공고 : 개최 14일 전까지 일간 및 지역신문에 공고

○ 공고내용

- 개발기본계획의 개요
- 공청회 일시 및 장소
-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